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
제6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[2026. 9.28.(월)]

마창대교 출·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
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창 원 시 의 회
(건설해양농림위원회)

마창대교 출·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
심 사 보 고 서

2026. 9. 28.
건설해양농림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. 8. 26. 창원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6. 8. 27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
제6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(2026.9.28.) 상정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『마창대교』는 경남 서부권과 창원, 김해, 부산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의 핵심 시설로 경남지역 물류 이동의 중심 기능과, 창원 시내를 통과할 때보다 약 7㎞의 거리 단축 및 30분의 시간 단축 효과로 기존 도심지 교통혼잡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는 도로로서,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와 사업시행자인 ㈜마창대교가 민간투자사업(BTO)으로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음

○ 2008년 7월 마창대교 개통 이후 ‘㎞당 단위요금’이 국내 유료도로 중 가장 비싼 도로라는 오명을 받고 있으며, 이용자 부담 경감, 물류 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로 이용자 및 지역 상공업계 등에서 지속적인 통행료 인하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

○ 이에, 마창대교의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에서 **'22년 통행료 인상분(500원 인하)을 동결**하고, **주중 출·퇴근 시간 통행료를 32% 할인(800원 인하)**하는 통행료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 경상남도에서 통행료 할인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우리 시에 지원요청 하였음

○ 마창대교(민간투자사업)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의 '마창대교 통행료 할인 정책' 에 우리 시 재정을 지원하는 사항은「지방자치법」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제1항 제8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시의회 의결(동의)을 받고자 함

나. 그간 추진사항

○ 마산~진해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기본설계(건설교통부) : '96. 12. 30.

○ 마창대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: '03. 5. 13.

○ 마창대교 기공식(공사착공 2004. 4. 15) : '03. 8. 27.

○ 준공 및 개통 : '08. 7. 1.

○ 사업재구조화에 따른 변경실시협약 체결 : '17. 1. 26.

* 최소수입보장(MRG))→수입분할관리

○ 통행료 인하 재정분담 협의(경남도-창원시) : '22. 8. ~ '23. 4.

○ 출·퇴근 시간 할인 정책에 따른 市재정지원 : '23. 7. ~ '26. 6.

- (할인률) 20%, (재정 분담률) 道 37% : 市 63%

○ 출·퇴근 시간 추가 할인(20%→32%) 정책 市재정지원 협의 : '26. 6. ~ 7.

- (할인률) 32%, (재정 분담률) 道 50% : 市 50% (13%↓ 하향 조정)

○ 마창대교 출·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추진방안(시장 결재) : '26. 7. 9.

○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(시→도) : '26. 7. 10.

다. 마창대교 통행료 할인 정책 개요(경상남도)

○ (협약통행료)

구 분	기준통행료(불변가)	2017년~2021년	2022년~2029년	2030년~2038년
소 형	**2,000원**	**2,500원**	**3,000원**	**3,500원**
중 형	2,500원	3,100원	3,800원	4,400원
대 형	3,000원	3,800원	4,500원	5,300원
특대형	4,000원	5,000원	6,000원	7,000원

○ **(통행료 동결)** '22년 통행료 인상분(소형차 기준 500원 인상) 동결

- 현행 통행료 동결 (소형 2,500원, 중형 3,100원, 대형 3,800원, 특대형 5,000원)

○ **(출퇴근 시간 32% 할인)** 평일 출·퇴근 시간 요금 할인

- 할인시간 : 주중(월~금), 07 ~ 09시, 17시 ~ 19시(4시간)
- 할 인 율 : 통행료의 32%(소형차 기준 800원 할인)
- 대상차종 : 전차종
- 출퇴근 시간 통행료 (소형 1,700원, 중형 2,200원, 대형 2,700원, 특대형 3,500원)

○ **(재정 소요액)** 연간 115억원(2025년 기준)

(부가가치세 제외)

구 분	재정 소요액			비고
	합 계	통행료 동결 보전	출·퇴근 할인 보전	
2025년	115억원	87억원	28억원	

*2022년 통행료 동결 보전 87억 道전액부담 + 출·퇴근 할인 28억 道·市분담 (市 지원액 11억원)

라. 우리시 재정지원 사항

○ '출퇴근 32% 할인' 비용 중 50% 지원 : **32억원(2년간)**

※ 출·퇴근 시간 통행차량 중 창원시 등록차량 비율 63%

- 지원기간 : '26. 7. 1. ~ '28. 6. 30.(2년간, 민선9기 공약 감안)
- 지원방법 : 경남도에서 분기별 재정지원액 산정(증빙첨부)하여 우리시에 통보
- 지원금액(추정) : 32억원(연평균 16억원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액	재정부담금		
		'26년 하반기	'27년	'28년 상반기
출퇴근할인	**64**	**16**	**32**	**16**
창원시(50%)	**32**	**8**	**16**	**8**
경남도(50%)	**32**	**8**	**16**	**8**

※ 지원금액은 추정금액으로 향후 실제 통행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마. 향후 추진계획

○ 재정지원 업무협약 체결 (창원시 ↔ 경남도) : '26. 9월

바. 관련 규정

○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
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

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**예산 외의 의무부담**이나 권리의 포기

3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정은정)

□ **본 동의안은** 경상남도의 '마창대교 통행료 할인 정책'에 따라 우리 시 재정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

◈ **지방자치법**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**예산 외의 의무부담**이나 권리의 포기

□ 마창대교 통행료 할인 정책 주요 내용

○ 2023. 7. 1. ~ 2026. 6. 30. 할인 정책

- 마창대교는 창원과 경남 서부권 및 김해·부산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시설로서 도심 교통혼잡 완화와 물류 이동에 기여하고 있으나

상대적으로 높은 통행료로 인해 이용자 부담 경감 요구가 지속되어 왔음

- 이에 경상남도는 '22년 통행료 인상분을 동결하고, '23. 7. 1~ '26. 6. 30. 까지 **출·퇴근 시간 요금 20% 할인 정책**을 수립하였으며, 출·퇴근 시간 할인 비용 중 창원시 등록 차량 통행 비율인 63%를 창원시에 재정지원 요청한 바 있고, 창원시는 3년간 32억 원을 지원함

【마창대교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현황】 ('23.6.23. 제125회 제1차 정례회 원안가결)

- 지원기간: 2023.7.1. ~2026.6.30.(3년간)
- 할인내용: 평일 출퇴근(07:00~09:00, 17:00~19:00) 4시간 동안 20% 할인
- 대상차종 : 전차종
- 출퇴근 시간 통행료 (**소형 2,000원**, 중형 2,500원, 대형 3,100원, 특대형 4,000원)
- 지원비율: 출퇴근 할인금액의 63% 지원 ※ 출퇴근시간 창원시 등록차량 통행량 비율 (경남도 37% / 창원시 63%)
- 지원금액

(단위: 백만원)

합 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3,246	505	1,075	1,108	558

자료 제공: 건설도로과

○ 2026. 7. 1. ~ 2028. 6. 30. 할인 정책

- 2025년 10월부터 경상남도는 평일 출·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**32% 할인하는 단기정책**[1]을 시행 중이며, 통행료 인하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창원시에 지원 요청함. **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** 경상남도와 재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, 마창대교 통행료 할인에 따른 수입 감소분 중 **50%를** 창원시에서 지원하려는 것으로, '26년 7월부터 '28년 6월, 2년간 총 32억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게 됨

1) 경남도- ㈜마창대교와 국제중재에서 승소하여 얻은 예산절감액 46억원(민선8기 절감분)을 출·퇴근통행료 32% 인하에 사용

【마창대교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주요 내용】

- 지원기간: 2026.7.1. ~2028.6.30.(2년간)
- 할인내용: 평일 출퇴근(07:00~09:00, 17:00~19:00) 4시간 동안 32% 할인
- 대상차종 : 전차종
- 출퇴근 시간 통행료 (**소형 1,700원**, 중형 2,200원, 대형 2,700원, 특대형 3,500원)
- 지원비율: 출퇴근 할인금액의 50% 지원(당초 63% → 50% 하향 조정)
 (경남도 50% / 창원시 50%)
- 시 재정 분담금(예상) 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액	2년간 재정부담금		
		'26년 하반기	'27년	'28년 상반기
출퇴근 할인(32%) 50%분담	32	8	16	8

자료 제공: 건설도로과

□ 종합의견

○ 마창대교는 출·퇴근 및 지역 물류 이동에 이용되는 주요 시설로서 출·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은 이용자의 직접적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심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

○ 또한 2023년도부터 출·퇴근 시간대 통행료 할인 정책이 시행되어 온 만큼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

○ 따라서 이번 출·퇴근 시간대 할인에 대한 재정지원은 기존 정책의 연속성 및 이용자 부담완화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됨

○ 다만, 금번 재정분담 비율이 기존 창원시 63%, 경상남도 37%에서 양 기관 각각 50%로 조정되어 창원시 재정부담이 완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,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이 경상

남도인 점과 출퇴근 이용차량의 지역별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정분담 비율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

○ 아울러, 본 협약 동의안은 단기적 할인정책이므로 마창대교의 통행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약서에 명시된 경상남도·창원시 간 TF가 형식적인 협의기구에 그치지 않고, 마창대교의 사업구조 및 통행료 체계 전반을 검토하여 재구조화 방안, 통행료 부담 완화 및 장기적인 재정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· 답변요지: 기재생략

5. 토론(대체토론)요지(주요문제점): 없음

6. 심사결과: **원안가결**

7. 소수의견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(부대의견, 건의사항, 촉구사항 등): 없음